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07년 6월 11일

나. 발 의 자 : 김상조 의원 외 10인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6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07년 6월 14일

제12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 상 조 의원

나. 제안이유

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
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
의 애국정신을 함양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(수권자)이 관내에서 신청, 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추가함 (안 제6조제1항제3호)

라. 참고사항
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, 제6조
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조
-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코자 관내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의원발의로 개정하는 조례안임.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, 참전유공자, 5.18 민주유공자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(수권자)에 대하여
- 관내에서 신청,등록하는 각종 제증명 등에 대해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